

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식당 및 매점 운영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17.01.31. 강원도소방학교훈령 제 32호

일부개정 2023.6.11.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훈령 제 45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(이하 “소방학교”라 한다) 교직원 및 교육생의 후생복지를 위한 식당 및 매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식당 및 매점 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식당 및 매점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식당 및 매점 운영의 기본방침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
2. 위탁운영사업자의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
3. 식당 및 매점 운영에 관한 자료의 요구 및 감독에 관한 사항
4. 식당 및 매점 관련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5. 식당 및 매점 운영에 따른 건의사항 등의 청취 및 처리에 관한 사항
6. 그 밖의 식당 및 매점 운영에 관한 사항

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에 소방학교 소속 공무원 중 학교장이 지정한 자로(팀장급 3명 이상) 하되, 필요에 따라 2인 이내의 집단 급식 등과 관련된 외부 전문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, 이때에도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팀장급 3인 이상을 포함한다.

위촉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시설운영팀장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의 위 · 해촉) 위원장 및 위원은 매 위원회 개최 시마다 학교장의 지정에 의해 위촉되며, 위원회 종료 후 당연 해촉된다.

제5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탁운영사업자(위탁운영업체 선정공고에 따른 입찰참가자를 포함한다. 이하 1항 각 호 및 제2항, 제3항에서 같다)이거나 위탁운영사업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위탁운영사업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및 법인이 해당 위탁운영사업자에 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② 위탁운영사업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, 위원 스스로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.

제6조(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식당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의 사고 시에는 제3조 제3항의 위원 중 학교장이 지정한 자가 대행한다.

③ 간사는 회의사항의 기록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,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매년 11월에 개최한다.

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식당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④ 소방학교 교직원은 누구나 식당운영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을 위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8조(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/3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, 의사결정 사항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9조(자료의 요구 등) 위원회는 식당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 및 감독 등 필요에 따라 위탁운영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0조(건의사항 등 청취) 위원회는 식당운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생 및 교직원의 식당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.

제11조(보칙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.

부 칙<제45호,2023.6.11.>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